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6990 제출연월일 : 2024. 1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원보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휴가도 육아휴직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원보충 사유를 확대하고,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공무상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휴직 연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며,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성폭력・성희롱 비위 관련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해당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로 하여금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를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직으로"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까지 및 제4항"을 "제4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후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1. 병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휴가와 제6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2. 출산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휴가와 제63조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3. 퇴직(제61조에 따른 당연퇴직 및 제62조에 따른 직권면직은 제외한다)할 때까지 연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휴가를붙여 사용하는 경우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견의 파견기간 시작일 전까지 연가 및 그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 제41조의4제2항 본문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3년"을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5년)"으로, "2년"을 "2년(「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2년"을 "2년(「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제66조의2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단서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 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청심사가 청구된 사실 및 제1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의2제1항 전단 중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다.

제69조의2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1호, 제41조의4제2항, 제66조의2제4항 및 제69조의2제4항 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등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가·휴가나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병가·휴가 또는 휴직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남은 병가·휴가 및 휴직을 합산한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② 제4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산휴가·휴가 나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휴가·휴가 또는 휴직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을 기준으로 남은 출산휴가·휴가 및 휴직을 합산한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③ 제4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연가・휴가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3조(공무상 질병휴직 및 연수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결정 결과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심사가 청구되어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소청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같은 항 제1호"를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본

다"를 "보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1조"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같은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를 "같은 법 제6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같은 항 제1호"를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본다"를 "보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1조"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6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	제3조(적용범위) ①
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	
면 제31조, <u>제41조제1항</u> , 제42	<u>제41</u> 조제1항, 같은
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	
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	
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	
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	
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	
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신규임용) ① (생 략)	제27조(신규임용) ① (현행과 같
	<u>수</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	
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	
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	
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	
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	
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 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 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 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 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 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 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 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 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 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 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 우

2. ~ 13. (생 략)

1
<u>제63</u> 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휴직기간이 끝난 후
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
직으로
2. ~ 13. (현행과 같음)

- ③ 삭 제
- ④ ~ ⑥ (생 략)
-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저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 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 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 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 의 직급 • 직위 또는 상당 계급 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또 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1. 병가와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2. 출산휴가와 제63조제2항제4 <삭 제> 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 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② (생략)

<신 설>

의
- —
_
_
_
_
_
_
_

<삭 제>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 휴가 또는 휴직 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1. 병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 는 조례로 정하는 휴가와 제 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2. 출산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휴가와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사용하는 경우
- 3. 퇴직(제61조에 따른 당연퇴 직 및 제62조에 따른 직권면 직은 제외한다)할 때까지 연 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견의 파견기간 시작일 전까지 연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 레로 정하는 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

③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 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 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 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 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

같음)
<u>⑥</u> <u>제4항까지 및 제5</u>
<u> ক</u> ্ট্ৰ
<u>제1항 및 제3항</u>
.
1. ~ 4. (현행과 같음)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① (현행
제41소의4(상학금 지급) (1) (현행 과 같음)
과 같음)

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 제 음 각 호와 같다.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 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 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 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 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가.·나. (생략) 2. ~ 6. (생략)

「지방행
전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
③ (현행과 같음)
64조(휴직기간)
1
<u> 공무상 질병</u>
<u>3년(「공무원 재해보</u>
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u> 경우에는 5년)</u>
2년(「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u> 3년)</u>
가.・나.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 2. ~ 6. (생략)
- 7.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 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 10. (생략)

- (생 략)
 -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 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생 략)
-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② (생 략)

<신 설>

- 2. ~ 6. (현행과 같음)
- ----- 2년(「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사학위 또는 전문 학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년) ---.

8. ~ 10.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 ③ |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⑤ (현행과 같음)
-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 ② (현행 과 같음)
 - ③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 된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 는 경우에는 해당 소청심사가 청구된 사실 및 제1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생	략)
(\ 0	1/

- ④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항에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보충발령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그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 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 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임용권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u>5</u></u>
<u>স</u> া6 চ্টা
<u>⑥</u> 제4항
<u>.</u>
<u>⑦</u> <u>제6항</u>

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u>제3항</u>의 심사청구 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지수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보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이를 신고할수 있다. 이 경우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u> </u>
<u> ⑨</u> <u>제4항</u>
세67조의2(고충처리) ①
<u>성폭</u> 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 재해보상법」
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이하

- ② (생략)
-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u>성폭력</u>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 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④ ~ ⑥ (생 략)
-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 ③ 저 (생 략)
 -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수 있다.
 - ⑤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성폭력</u>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
ট্র
④ ~ ⑥ (현행과 같음)
세69조의2(징계부가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4
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u> 관한 법률」</u>

⑤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 자 등의 결원 보충) 제3항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휴가도 육아휴직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원보충 사유 확대
2	제64조(휴직기간) 제1호	○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5년→8년)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 자 등의 결원 보충) 제4항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2	제64조(휴직기간) 제1호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3항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육아·질병휴직, 퇴직준비교육 파견, 퇴직 등과 연계하여 휴가 등을 사용할 인원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인사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추계가 곤란

○ 제64조(휴직기간) 제1호

- 개정안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이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상 질병휴직기간(5년 원칙, 3년 범위내 연장 가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휴직 인원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인사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추계가 곤란

Ⅲ. 부대의견

\bigcirc	칭	당	엀	은
\smile	٠,		ᄡ	О

Ⅳ.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실장•국장
전혜란	오연순	하인호	여중협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오연순	044-205-3342	ys2631@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